

■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------	--------	-----
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1항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나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다.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 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제2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